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숙박요금의 신고·공개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등〉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360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숙박요금의 신고·공개 및 부당행위 금지	2
2. 특별관광관리구역의 지정	8
3.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10
※ 참고자료	16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의 준수사항	16
2.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중 숙박 관련 주요 내용	18
3. 관광진흥법상 숙박 관련 업종 현황	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6. 7. 31.

다. 회 부 일: 2026. 8.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융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숙박요금의 신고·공개 및 부당행위 금지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관광숙박업자가 숙박요금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숙박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공개하도록 하며(안 제18조의3 신설), ② 숙박요금 초과 징수 행위,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 등 숙박요금과 관련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임(안 제18조의5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의3(숙박요금의 신고 및 공개)</u> <u>①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숙박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5(부당요금 행위 금지) 관광숙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숙박요금을 현저히 초과하여 받는 행위 2.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3. 게시 또는 공표한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는 행위 4. 허위 할인 또는 가격조작 행위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 검토사항

최근 성수기나 아이돌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일부 숙박업자들이 숙박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 후 가격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광숙박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 또는 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일방적 예약 취소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수단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자에게 숙박요금의 신고 및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숙박요금 초과 징수 행위, 일방적 예약 취소 행위 등 숙박

요금과 관련된 부당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시 과도한 숙박요금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시장 가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관광 지로서의 국가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6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¹⁾을 발표하였으며,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 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에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이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숙박업을 포함한 숙박업의 자율요금 사전 신고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²⁾은 「관광진흥법」에, 농 어촌민박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할 계획임.

1)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중 숙박 관련 주요 내용은 [참고자료 2] 참조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 (생 략)

[숙박업 등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운영방안(안)]

※ 대상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도농교류법),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

1. 운영방안

- ① (자율요금 사전신고) 시기별(성수/비성수기/주말/평일/특별행사 등) 숙박요금 상한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전적으로 신고(예: 연 1회)해야 하는 의무 부과
 - (정부) 제도 마련 + 지방정부가 신고접수(가격결정에는 정부개입 ×)
 - (민간) 자율신고요금이 과도한 수준으로 형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 중심 자율적 가이드(예: ①성수기 인상률, ②신고요금/현행요금 비율 등) 운영

* 정부-업계(숙박협회 등)간 협약(MOU)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적정요금 자율형성 유도

- ② (신고요금 공개) 자율요금 신고와 함께 공개 의무 부과 → 업체는 ①숙박예약 플랫폼(OTA) 또는 ②자체 홈페이지, ③접객대 등에 신고요금을 게시
 -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자율가이드를 준수하여 자율신고요금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플랫폼상 “안심가격업소” 표시 부여
 - 신고접수를 받은 지방정부도 홈페이지에 업체별 신고요금 게시

- ③ (의무위반시 제재) 업체가 ①시기별 요금을 사전신고하지 않거나, ②신고 요금 수준을 초과하여 요금징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부과

* (예) (1차위반시)영업정지 5일 (2차)영업정지 10일, (3차)영업정지 20일, (4차)영업장 폐쇄명령

2. 향후계획

- ① 자율요금 사전신고제(신고·공개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 등) 법적근거 마련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도농교류법 등 개정 발의)
 - 법개정 後 ^{가칭}자율요금 사전신고 운영지침(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 마련
- ② 제도 홍보, 협조 등을 위한 중앙숙박협회-플랫폼-중앙정부 MOU 체결
 - 법개정 前 지역별로 사전신고제를 자율도입(지방정부-지역숙박협회 등 MOU)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인센티브 우대 추진

※ 여수시, 보령시 등 일부 지방정부는 자율참여를 전제로 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既 운영중

출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합동, 2026. 2. 25.

참고로, 숙박업자의 숙박요금 신고·게시 의무, 일방적 예약 취소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일방적 예약 취소 후 요금인상 재판매 시 과징금 부과(50배)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2220483호)이 발의('26.8.6.)되어 보건복지 위원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 비교]

구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제2220360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2220483호)
공통	- 관광숙박요금 신고·공개 의무 부과 - 관광숙박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 금지	- 숙박요금 신고·게시 의무 부과 - 숙박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금지
차이점	- 부당 요금행위 금지(신고요금 초과 징수, 허위 할인·가격조작 행위 등) -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시정명령, 과징금, 공표) - 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	- 숙박요금 신고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예약 취소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방적 예약 취소 후 요금인상 재판매 시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한편, 안 제18조의5는 관광숙박업자의 금지행위로 신고한 숙박요금을 “현저히” 초과하여 받는 행위(제1호),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제2호), 게시 또는 공표한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는 행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숙박요금 신고제 적용대상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②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까지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 의무 대상을 숙박요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하여 개별 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받은 숙박요금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④ 명확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부당요금 행위의 요건을 조정³⁾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3) - 집행과정에서 예약의 일방적 취소가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적 행위만으로 의무를 규정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 게시 또는 공표한 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 행위’는 관광객에게 유리한 계약이므로, 금지대상을 ‘높은 요금을 받는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허위 할인·가격조작 행위(제4호)’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게시 또는 공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행위(제3호) 금지’라는 객관적 행위에 근거하여 의무 부과
 - 부당요금 확인에 필요한 정보 요청 근거 규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부령에 위임하는 규정 추가

2. 특별관광관리구역의 지정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적·국가적 규모의 문화행사,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행사의 경우 숙박요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18조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8조의4(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과 숙박요금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숙박요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제회의·국제박람회·국제스포츠행사 등 국제적 문화행사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공연, 지역축제 등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행사 3. 국가적 규모의 문화행사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요금 관리를

현행	개정안
	<u>위한 기간과 특별관광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다. 검토사항

개정안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숙박요금의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을 일정기간 동안 특별관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 시 숙박요금의 급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다만, 안 제18조의4는 특별관광관리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된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숙박요금 관리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관리수단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관광관리구역의 지정은 업종간 규제 형평성,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숙박요금과 관련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의 조기상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의6 신설), ② 숙박요금의 신고 의무 및 숙박요금 관련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7 신설), ③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18조의8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6(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줄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현행	개정안
<신설>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조기상환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시정명령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5를 위반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위반 사업자 공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다. 검토사항

개정안은 숙박요금의 신고 의무 및 숙박요금과 관련된 부당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위

반사실 공표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용자 조기상환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관련 의무 이행을 제고함으로써 숙박요금 관련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공중위생관리법」⁴⁾은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한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⑥ (생략)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생략)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의2. 8. (생략)

② ~ ⑦ (생략)

제20조(벌칙) ①·② (생략)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업자와 기타 숙박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 제재수단 및 제재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8조의6제1항 및 제3항은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제한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용자의 조기상환 명령대상을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관광숙박업자로 규정하면서 중대한 위반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⁵⁾ 지원 제한의 내용 및 기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중대한 위반행위의 유형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④ (생략)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 전체 숙박업자의 준수사항은 [참고자료 1] 참조

5) 헌법재판소는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면서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① 제재 대상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로 변경하되, 추후 관계법령을 고려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② 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을 시정명령 대신 사업정지 및 등록 취소로 규정하는 것이 실효적이며, ③ 위반 사업자 공표의 주체를 등록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구분 (의안번호)	김재원의원안 (제2217576호)	이춘석의원안 (제2219160호)	이정문의원안 (제2220360호)	김재원의원안 (제2221123호)
적용 대상	관광숙박업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공통	- 숙박요금 신고 의무 부과 -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 금지			
차이점	-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 - 관광특별관리기간 지정	- 신고요금 게시 의무 부과 - 신고요금 초과 징수 금지 - 준수사항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요금 공개 의무 부과 - 부당 요금행위 금지(신고요금 초과 징수, 허위 할인·가격조작 행위 등) -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시 정명령, 과징금, 공표) - 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	- 일방적인 예약 취소·변경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 - 준수사항 위반 시 등록취소·사업 정지 - 일방적 예약 취소 후 요금인상 재 판매 시 재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 위반사실 공표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자의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 (4)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 (1) 원수는 별표 2 I 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

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중 숙박 관련 주요 내용

□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가격 투명성 제고

○ 가격 미표시·미준수 등 적발 시 **법적제재 강화**(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

*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제재규정 부재 또는 경고·개선명령 등→영업정지 5일

품목		위반사항(법령)	위반시 조치사항	
			현행	개선(안)
숙박	숙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한옥 체험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사업등록 취소
	외국인 도시민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위반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재규정 부재	

○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미비** 업종에 대해 **의무 부과 신설**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 숙박 플랫폼 사용자 **후기기능 강화**로 자율적 품질개선 유도

* (예) 가격·서비스 등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후기 입력체계 고도화, 허위·조작후기 대응 강화 등

□ 과도한 요금인상 방지 및 합리적 가격 형성

○ ‘시기별(비성수기·성수기 등) 요금 자율결정 - 사전 신고 - 공개’ 방식의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 (신고·공개) 지방정부에 신고 → 업체는 숙박 플랫폼, 자체 홈페이지,接客대 등에 신고요금 게시

** (제재) 업체가 ①시기별 요금 사전 미신고, 또는 ②신고요금 초과 징수 시 → 제재 부과

○ 가격인상·재판매 목적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 신설

* 가격 미표시·미준수와 동일하게 영업정지 ** 계약금 환불+배상규정 신설

□ 제도적 유인 강화 및 민·관 참여형 통합관리

○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

*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 받은 업체 호텔업 등급 평가시 감점, 숙박세일페스타 참여 배제 등

○ 민간협회*·플랫폼·소비자** 등 민간주체의 자율점검·지도 확대

* 숙박업중앙회 등 통해 가격표시 관리, 자율지도 등 ** 누리살핌단 국민 참여 확대

출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합동, 2026. 2. 25.

3. 관광진흥법상 숙박 관련 업종 현황 (2025년 12월 기준)

(단위: 개/ 실)

구 분		주요 특징	업체수	객실수
호텔업	관광호텔업	▲부대시설(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 구비 ▲30실 이상	1,114	142,075
	가족호텔업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취사시설 갖춘 19㎡ 이상 객실 숙박 제공 ▲30실 이상	152	13,557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고정하거나 맨 구조물 또는 선박에서 관광객에게 숙박 제공 ▲ 30실 이상	-	-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 건축물에서 관광객에게 숙박 제공	11	201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취사시설 갖춘 19㎡ 이상 객실 숙박 제공 ▲ 20실 이상	2	80
	소형호텔업	▲부대시설 2종 이상 ▲20실 이상 30실 미만	61	1,473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 ▲내외국인 관광객의 문화·정보교류시설 등 구비	1,406	19,136
소계			2,746	176,522
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내 취사시설, 문화체육공간(1개소 이상) 구비 ▲매점 설치, ▲30실 이상	250	50,317
관광숙박시설			2,996	226,839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음식 등을 제공	8,183	13,785
한옥체험업		한옥에서 숙박 체험 또는 전통문화체험을 제공	2,435	7,508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13,614	248,132

자료: 지방자치단체 자체조사 종합